

경상북도 고시 제 2015-45호

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 실시명령 고시
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(검진)·주사·투약(구제)을 실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2015년 1월 26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목적 :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검사, 주사, 투약을 실시토록 하여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아 농가피해를 막고 위생적인 육류공급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

2. 실시지역 : 도내 전지역

3. 대상가축 및 질병의 종류

가. 예방주사

○ 소 : 구제역, 탄저·기종저 혼합, 전염성비기관염, 유행열, 아까바네병,
설사병

○ 돼지 : 구제역, 돼지열병·단독, 돼지일본뇌염, PCV-2(돼지췌코바이러스)

○ 염소 : 구제역

○ 닭 : 뉴캐슬병, 마이코플라즈마병

○ 개 : 광견병

나. 검진 : 소 결핵병, 소 브루셀라병, 사슴결핵, 돼지 오제스키병, 돼지열병,
닭 추백리, 조류인플루엔자

다. 투약(구제) : 꿀벌응애, 꿀벌노제마병, 낭충봉아부패병

4. 실시기간 : 2015. 2. 1일부터 별도 고시가 있을 때까지

5. 기타

○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예방접종 및 검진을 실시하고 가축
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
예방접종과 검진 및 투약실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